지식경제부 보도참고자료
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
http://www.mke.go.kr
2011년 11월 29일(화) 배포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자료문의 : 최형기 전력산업과장, 박정미 서기관(02-2110-4898)
이영훈 해외투자과장, 고승진 사무관(02-2110-5377)
유성우 FTA팀장, 노지선 사무관(02-2110-4846)

# 한미 FTA가 에너지분야 공공정책에 미치는 영향

**<관련 쟁점>**

① 한미 FTA가 전력산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를 인정
② 미국이 FTA 조항을 근거삼아 민영화를 압박할 수 있음
③ 외국인이 발전설비의 30%, 발전사 1~2개를 소유하게 될 우려
④ 외국인 투자자는 전기요금 규제를 대상으로 ISD 제소 가능
⑤ 가스요금을 상업적 고려에 따라 책정하도록 하여 지차체 요금조정 권한이 축소되고 도시가스의 지속적 확대정책이 사실상 불가능

## ① [쟁점] 한미 FTA가 전력산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를 인정

○ 한미 FTA 협정상 전력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 제한 수준은 **기존 국내법에 따른 제한과 동일한 수준**으로,

- 한미 FTA를 통해 전력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한도를 추가적으로 확대한 것이 아님

* (현행 외국인투자제한) 한전은 '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'에 따라 지분의 40%, 발전설비 및 송배전판매 부문은 '외국인투자촉진법'에 따라 각각 30% 및 50%로 제한

| 분 야 | 한-미 FTA | 현 행 법 령 |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
| KEPCO | 지분 : **40%** (최대주주 불가) | 지분 : 40% | 자본시장법 168조, 시행령 187조 한국전력공사 정관 12조 | 동일 |
| | 1인 : **3%** | 1인 : 3% | | |
| 원자력 | **미개방** | 미개방 | 외국인투자촉진법 4조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(지경부 고시) 5조, 별표 2 | 동일 |
| 발 전 | 설비 : **30%** | 설비 : 30% | | 동일 |
| 송배전/판매 | 지분 : **50% 미만** (최대주주 불가) | 지분 : 50% 미만 (최대주주 불가) | | 동일 |

## ② [쟁점] 미국이 FTA 조항을 근거삼아 민영화를 압박할 수 있음

○ 한미FTA 부속서는 우리나라가 **정부기관이나 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및 자산의 처분과 관련한 권리를 보유**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

- 전력산업의 민영화와 관련된 **어떠한 정책적인 결정도 우리 정부가 자유롭게** 내릴 수 있으며, FTA의 영향을 받지 않음

○ 특히, 정부나 공기업이 보유한 지분·자산의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**내국민대우 적용이 유보**되므로 (부속서 2)

- 향후 우리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 발전자회사를 매각하게 되는 경우라도,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추진할 수 있음

## ③ [쟁점] 외국인투자자가 발전설비의 30%, 발전사 1~2개를 소유하게 될 우려

○ 화력발전 5개사는 모두 한전이 지분 100%를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로,

- 전력산업의 민영화와 관련된 **어떠한 정책적인 결정도 우리 정부가 자유롭게** 내릴 수 있으며, FTA의 영향을 받지 않음

- 설령 민영화를 추진하는 경우라도, 공기업이 보유한 지분의 처리는 정책적 결정에 따라 외국인에게 제한할 수 있음

< 우리나라 발전설비용량 >

'11.10.31 기준 (단위:만kW)

| 한국전력공사 자회사 | | | | | | | 민영회사 | 총계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한수원 | 남동 | 중부 | 서부 | 남부 | 동서 | 소계 | 기타(8개사) | |
| 30.25% | 10.60% | 10.03% | 10.61% | 11.66% | 11.13% | 84.28% | 15.72% | 100% |
| 23,959 | 8,395 | 7,948 | 8,403 | 9,238 | 8,812 | 66,755 | 12,457 | 79,212 |

### ④ [쟁점] 외국인 투자자는 전기요금 규제를 대상으로 ISD 제소 가능

○ 한·미 FTA(한·미 FTA 제16.2조제1항나호 후단 및 각주3)* 하에서 전기·수도·가스 등 공공서비스 요금에 대한 **정부의 규제 권한**은 **그대로 유지**되어 **정부의 요금규제는 ISD 제기 근거가 되지 않음**

* 각주3: 나호(상업적 고려에 따라서만 행동할 것)는 규제당국에 의하여 승인된 특정 요금이나 그 밖의 조건을 지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.

### ⑤ [쟁점] 한미FTA로 도시가스 도소매업에 외국자본 진출시 가스요금을 상업적 고려에 따라 책정하도록 하여 지차체 요금조정권한이 축소되고 도시가스의 확대정책이 사실상 불가능

○ 한·미 FTA 제16.2조제1항나호에 지정독점은 원칙적으로 일반 민간기업처럼 상업적 고려(commercial considerations)에 따라 활동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,

- 동 조항 후단 및 각주3에 **정부가 지정한 운영요건**(요금, 사업구역 등)을 따르기 위한 경우, **동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시**하고 있음

○ 도시가스 소매사업에 대한 외국자본 진출은 **한·미 FTA 협상 개시 이전부터 허용되어 온 것**으로,

- 지자체 역시 지역적 사정에 근거한 요금조정 정책* 가능하여 한·미 FTA가 발효로 지자체의 요금조정 정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

* 일반도시가스 소매사업자가 원가에 마진을 붙여 승인신청을 하면,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설립된 심의위원회가 심의 후, 지자체장이 최종 승인